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출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기술 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총무과·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3명(4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하고, 범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정원 274명(7급 92명, 9급 18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2명, 8급 18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403명”을 “402명”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 중 “제16조의6제6항”을 각각 “제16조의6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형사제5부·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형사제5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 중 “제16조의6제6항”을 각각 “제16조의6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금융조사제2부”를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및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7제6항, 제16조의8제3항, 제16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11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의6제6항”을 각각 “제16조의6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12 중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두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둔다”를 “둔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535”를 “5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5”를 “536”으로 하며, 검찰주사보 “89”를 “9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수원지방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란 중 “공판부”를 “공판제1부”로 하고, 같은 표 대구지방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란 중 “공판제1부”를 “공판부”로 하며, 같은 표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란 다음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 무 국	총무과 · 사건과 · 집행과 · 수사과
-----------------	-------	-----------------------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 · 증권범죄수사과	1명 (4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6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7,829
일반직 계	7,829
고위공무원단	25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6
검찰수사서기관	112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검찰사무관	402
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
마약수사사무관	24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검찰주사	1,434
검찰주사 또는 마약수사주사	1
마약수사주사	78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1
운전주사	1
방호주사	1
검찰주사보	1,696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1
마약수사주사보	80
사서주사보	2
사서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임업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0
운전주사보	2
방호주사보	2
검찰서기	1,167
검찰서기 또는 마약수사서기	1
마약수사서기	73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46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2
위생서기	1
운전서기	16
방호서기	9
검찰서기보	683
마약수사서기보	44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1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7
운전서기보	238
방호서기보	132
보건연구사	2
기록연구사	23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3
열관리운영서기보	9
사무운영서기보	1,2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락)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 서기관 · 검찰사무관 또는 마약 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 찰사무관 <u>403명</u> 중 79명은 「검 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 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 의 정원으로 본다.	⑥ ----- ----- ----- ----- <u>402명</u> ----- ----- ----- -----.
⑦ · ⑧ (생 락)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사무국) ① · ② (생 락)	제2조의2(사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안산지청 · 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 안지청, <u>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 청</u>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 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 ----- <u>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 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u> ----- -----.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⑤ (생 락)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	⑥ -----

6항 및 <u>제16조의6제6항</u> 의 사항을 분장한다.	----- <u>제16조의6제6항 · 제7항</u>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⑤ (생략)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 6항 및 <u>제16조의6제6항</u> 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u>제16조의6제6항 · 제7항</u>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 무) ① (생략)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 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 · 형사제1부 · 형사제2부 · 형사제 3부 · 형사제4부 · <u>형사제5부</u> · <u>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u> <u>청에 한정한다)</u> 및 여성아동범 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장을 보좌한다.	②----- ----- ----- ----- <u>형사제5부</u> -- ----- -----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 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 정한다), <u>강력범죄수사부(인천</u> <u>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u> , 방위	③ ----- ----- ----- ----- <u>강력범죄수사부(인천</u> <u>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u> , 국제

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법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인천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제16조의4(인천지방법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②
(생략)

③ 인천지방법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법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

범죄수사부(인천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인천지방법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6조의6제6항·
제7항-----

----- 제16조의6제6항
· 제7항-----

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 ⑩ (생략)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생략)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② ~ ⑥ (생략)

<신설>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금융조사제2부, 가상
자산범죄합동수사부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
제2부 및 가상자산범죄합동수
사부-----.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가. <u>가상자산 관련 범죄</u> 나. <u>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u> 2. <u>일반 형사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3. <u>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u>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u>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⑤ (생략)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제8항 및 <u>제16조의 6제6항</u> 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u>제16조의 6제6항·제7항</u>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②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②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생략)

[illegible]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 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
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 같
은 조 제13항·제14항, 제16조
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
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
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
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
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
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
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
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
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
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
다.

④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
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
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 제16조의6제6항·
제7항-----

-----.

③ -----

----- 제
16조의6제6항·제7항-----

-----.

④ -----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청주지방법검찰청, 전주지방법검찰청 및 제주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⑥ 춘천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⑦ ~ ⑪ (생략)

----- 제16조의6제6항 · 제7항-----

⑤ -----

제16조의6제6항 · 제7항-----

⑥ -----

----- 제16조의6제6항 · 제7항-----

⑦ ~ ⑪ (현행과 같음)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②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④ · ⑤ 삭 제

제16조의6제6항 · 제7항

③

제16조의6제6항 · 제7항

②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
검찰청 남양주지청, 대구지방검
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
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
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
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

②-----
----- 대구지방검
찰청 포항지청-----

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경주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제20항 단서 및 제28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 -----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5</u>	<u>536</u>	+1
일반직 계	<u>535</u>	<u>536</u>	+1
•	•	•	
•	•	•	
검찰주사보	<u>89</u>	<u>90</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